

이 보도자료는 2020. 7. 9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조범진

전화 055-350-4290 / 팩스 055-350-4555

보도자료

2020. 7. 9.(목)

제 목 계부/친모 아동학대 사건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(지청장 반종욱)은 '20. 1.경부터 '20. 5.하순경까지 계부와 친모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아동(9세)을 쇠막대기,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으로 학대한 사건을 수사하여, 오늘('20. 7. 9.)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상습특수상해)죄 등으로 계부를 구속 기소, 친모를 불구속 기소함
-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

1 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A(36세) : 피해자의 계부, 구속 기소
- 피고인 B(27세) : 피해자의 친모, 불구속 기소(입원 치료 중)
- 피해아동(9세) : 피고인 B의 4녀 중 장녀

2 공소사실 요지

- '20. 1.경부터 '20. 5. 초순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등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때리고, 달군 프라이팬으로 피해아동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, 글루건을 이용하여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하는 등, 상습으로, 단독 혹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함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상습특수상해)]

- '20. 5.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 2층 테라스에 나가게 한 다음 문을 시정하여 감금하고, 테라스 혹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는 방법으로, 상습으로,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아동을 감금하고 학대함[감금, 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 등]
- '20. 1.경부터 '20. 5.경까지 피해아동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쉬게 하고, 줄로 피해아동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피해아동을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고 욕조에 얼음을 쏟아넣는 등 학대하고, 피해아동에게 먹고 남은 음식,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씩 제공하는 등, 상습으로,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·방임함 [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, 상습아동유기·방임)]

3 수사 경과

- '20. 5. 29. 창녕서,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로 수사 착수
- '20. 6. 15. 피의자 A 구속
- '20. 6. 22. 창녕서 사건 송치(피의자 A: 구속, 피의자 B: 불구속)
- '20. 6. 22~7. 7. 밀양지청, 주거지 등 현장 압수수색 및 피의자·피해자 등 조사
- '20. 7. 7.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
- '20. 7. 9. 피의자 A 구속 기소, 피의자 B 불구속 기소

4 수사 결과

- 창녕경찰서 수사결과에 더하여 주거지 등 압수수색, 피해아동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,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, 범행도구 DNA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약 4개월 간 지속적 폭력·학대행위가 있었음을 규명하고 추가 범죄사실도 확인
- 피해아동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학대행위를 특정하고, 학대에 이르게 된 경위, 범행 도구, 범행 방법, 범행 장소,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, 횟수 등을 고려, 상습범으로 의율
-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(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치료, 학자금 지원 예정), 피고인 B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상실청구 및 후견인 지정 등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예정 ☑